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4. 7. 10.] [법률 제19963호, 2024. 1. 9., 일부개정]

【제정·개정이유】 [제정·개정문](#) [전체 제정·개정이유](#)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하도록 하며,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, 정관 기재사항, 사업 예산 및 결산 등을 명시하고,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.

<법제처 제공>

【제정·개정문】 [제정·개정이유](#) [전체 제정·개정문](#)

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(인)

2024년 1월 9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

○ 법률 제19963호